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68호

나. 발 의 자 : 김원중 의원(찬성자 16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등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
- 또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치구 및 전통시장 관계 기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 (안 제2조의2조 신설).
- 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전통시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4조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3년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전문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

-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과 동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이벤트,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

시장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전체 시장수 389개소, 점포수 6만8천여개소, 상인수 10만여명, 상인회 등록수 298개가 있음.

<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

(2024년 1월말 기준)

구 분 ¹⁾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계	389	68,660	107,019	298
등 록 ²⁾	118	31,127	39,709	60
인 정 ³⁾	121	15,952	30,238	115
상점가 ⁴⁾	62	11,252	22,977	60
골목형상점가 ⁵⁾	64	8,182	11,159	62
무등록 ⁶⁾	24	2,147	2,936	1

- 또한 서울시는 2024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278억 5천 8백여 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등 주요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예산
합계		27,858
경영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02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8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180

- 1)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됨.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3)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5) 전통시장법 제2조제2의2에 따라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 6) 전통시장으로 등록(인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장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839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00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등 지원	65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4,822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7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7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814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VIP존)	71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62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2,932

※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480백만원),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397백만원 별도

다. 주요내용 검토

(1) 시장의 책무(안 제2조의2 신설)

- 안 제2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현재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소비패턴에 맞춰 차별화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의지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2)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의2 신설)

- 안 제3조의2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먼저 동 조문에 따르면 실태조사에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 상인의 경영실태,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법 제6조⁷⁾ 및 제11조의2⁸⁾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안 제3조의2는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법 제9조⁹⁾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조의2의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u>3년마다</u>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 ----- ---- <u>매년</u> ----- -----.
②·③ (생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
- 7)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8)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9)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 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3)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14조 신설)

- 안 제14조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사업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치구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상인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음.
- 다만 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 제14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권고적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전통시장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문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동 조례 전반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안 제14조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은 특정 전문 연구 기관이 아닌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등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 ----- ----- -----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